



# 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May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 목 차

## - 무역관련 공통 ISSUE -

- (FTA) -----3page
- (품목분류) -----7page
- (AEO) -----13page
- (기타) -----15page

FTA



##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 관세율 10%→0%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도에 복사지, 전사지 등(HS 코드 4809.90)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연간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었다.

앞서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절감함은 물론,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대인도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우리 수출입업체가 부당한 관세 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 포털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이투데이)

## ★ KCC 1 분강의

양자간 체결된 FTA, CEPA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사와 같이 개별적인 국내사정에 따라 협정문상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지않거나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협정 명칭을 FTA 가 아닌 CEPA 로 한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에 매우 예민한 국가이며 원산지결정기준도 타 FTA 협정과 달리 결합기준이 대부분으로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등 협정을 적용하기위해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행하실 때에는 현지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해외수입자에게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수입자에게 확인이 불가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세청 또는 KOTRA 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트물품 수출입기업, FTA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한·중 FTA 세트(SET)물품 규정 위반 사례가 보고됐으며, 세트물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트(SET)물품' 규정이란,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의 특례기준이다. 우리나라가 중국·미국·EU·캐나다·EFTA·터키·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트물품은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10~15%)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예를 들어 파스타면(HS1902 호, 원산지물품), 토마토소스(HS2103 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용 포장돼 있는 파스타 세트(HS 1902 호) 등이 세트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 구성품으로 이뤄진 세트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FTA 세트물품 규정의 위배 여부를 검토해서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세트물품, 중간재, 최소허용수준 등 어렵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규정을 이해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세관은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서울세관 FTA 검증부서(02-510-1487/1496)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사업'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이 사전확인 지원을 신청하면 세관 FTA 전문가가 직접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해 준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기업 밀착형 수출지원 T/F 인 서울세관 '수출기업 지원팀'(02-510-1374)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지원팀에는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

심사 등 세관 각 분야 전문가가 배치돼 개별 수출기업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출처:세정신문)

**★ KCC 1 분강의**

세트물품으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 HS 통칙 제 3 호 나목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야하며

-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세트물품 규정을 충족할 경우 각 협정의 특례규정인 '세트물품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은 협정별로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세트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10-15%)을 초과할 경우 원산지로 불인정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세트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 작업을 한 후에 수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품목분류



관세청,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HS제 8524 호) 확정,

2022년부터 적용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HS 제 8524 호)이 확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HS)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며 40%에 이르는 세계 시장 점유율, 25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출액 등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주력 상품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내 모 기업이 폴란드로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에 현지 관세당국이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 500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 하자 관세청이 긴급 분쟁해결 지원에 나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돼 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1년여의 시간을 분쟁으로 보냈다.

관세청은 이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사라지게 됐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어려움과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키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 국제분쟁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뉴시스통신사)

#### ★ KCC 1 분강의

HS CODE 의 경우 6 단위까지는 전세계 공통된 기준이라고 하지만 각 국가의 상황과 관습 등에 따라 전혀 다른 HS CODE 에 분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과 같이 HS CODE 분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해외수입국에선 고세율의 HS CODE 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개발되어 출시되면서 HS CODE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S CODE 에 따라서 세율, 요건, 간이정액환급률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므로 무역 전반에 있어 HS CODE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당사에서도 분류에 대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HS 분류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수출 전용 '품목분류 6 단위 심사제도' 시행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물품에 한해 10 단위 심사에서 6 단위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 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HS)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국내기준 품목번호(HS Korea)는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 자리에 4 자리를 추가한 10 자리로 구성돼 있으며 수입 및 수출물품 분류에 활용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 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 달 이상 걸렸다. 실례로 통신기기의 경우 6 단위 HS 는 제 8517.62 호이지만 국내기준 10 단위는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 33 개로 세분화돼 있어 품목분류 결정에 오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 등은 품목분류 6 단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물품의 경우 품목분류 심사기간을 현재 30 일을 15 일로 단축키로 했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 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기업들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때 15 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으로 수출기업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통신사)

## ★ KCC 1 분강의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는 전세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품목번호는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 자리+ 4 자리 추가=국내기준(HS Korea)로 총 10 자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신기기의 분류처럼 10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수입국의 경우 6 자리까지 동일하므로 그 실효성 문제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이번에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품목분류 분쟁, 관세평가분류원 활용하세요"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분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분류원은 특히 분쟁신고 청구 역할을 맡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 결정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HS 국제분쟁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분류원은 이를 해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쟁 발생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시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며, 최종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 의제로 상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수출기업들이 절감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주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출처:조세일보)

### ★ KCC 1 분강의

품목분류는 수출입업체가 교역을 시작할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비록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기본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각 국가별로 6 단위 이하에 대해 자국의 산업구조와 경제특성에 따른 자율적 체제가 허용되어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해석에 상이성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국가별 또는 경제권역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체결 등이 잇따름으로써 교역의 양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복잡 다원화되고 있고, 관세율체계 또한 ‘1 품목-1 세율 체제’에서 ‘1 품목-다세율 체제’로 전환되면서 HS 품목분류 문제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AEO**



## **AEO 인증 받았더니 수입기업당 年 10 억 3 천만원 혜택 수출기업도 평균 7 억 7 천만원 혜택 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많은 기업들이 지난 한해에만 약 3 천 577 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공인된 AEO 기업은 총 298 개 기업이며, 우리나라가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0 개국에 달한다.

이에 앞서 김영문 청장은 부임 이후 일선세관에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을 강조 중으로, AEO 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AEO 인증기업이 누린 경제적 혜택을 분석한 결과, AEO 수입기업 한 곳당 검사비용 절감 등 연간 10 억 3 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EO 수입기업은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으로 신고정확도 향상,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세관에 담보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혜택을 누리고 있다.

AEO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 당 연간 7 억 4 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EO 수출기업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축소혜택을 입으며, 상대국 세관의 AEO 인증이 없어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고,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의 상승 또한 기대되고 있다.

특히 97 개 기업이 AEO MRA 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는 등 현지에서의 통관시간 축소로 약 12 억 6 천만불의 수출증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사사의 경우 AEO 인증 이후 신규 해외매출 66 억 증가로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미국으로 수출시 월 평균 2~3 회 수입검사를 받았으나, 인증 후 수입검사가 생략되어 연간 물류.검사비가 3 억 1 천만원 절감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5 월 1 일부터 AEO 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혜택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출처:세정신문)

**★ KCC 1 분강의**

미국에서 시작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인증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EO MRA 최다 체결국가로서 그 국가만 해도 19 개국(캐나다,싱가포르,미국,일본,인도,중국,대만 등)에 달합니다.

AEO 인증 수출업체의 경우 해외에서도 법규준수도 등이 인정되어 검사생략 등 혜택을 받으므로써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수출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AEO MRA 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기타



### 수출 부진에 1분기 경상수지 흑자 6년 9개월 만에 최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경상수지는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12년 2분기 109억 4천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적은 흑자 규모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96억 1천만 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인데, 1분기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1분기(170억 6천만 달러)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분기 수출은 1천 3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4% 줄었는데, 분기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3분기(-3.9%)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한은은 "세계교역량 둔화, 반도체 및 석유류 수출 감소, 대(對) 중국 수출 부진"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분기 수입이 1천 17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였습니다.

3월 경상수지는 4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은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품수지 악화 영향으로 흑자 폭은 지난해 3월(51억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상품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당액 송금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3월 중 서비스수지가 23억 4천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 지난해 3월(22억 6천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을 늘렸습니다.

한은은 "여행 및 운송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KBS 뉴스)



## 터키 찍고 불가리아로...육로 통관 눈여겨 본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제 6 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가 열렸다.

내년 3월 1일부터 유럽의 관문인 터키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실크로드 육로운송 활용,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분야에서 양국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전망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터키 최대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제 6 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AEO MRA 전면 시행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해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터키를 포함해 총 20 개국과 AEO MRA 를 체결한 상태인데 한국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뤄지고 있다"며 "AEO 수출기업이 적극 MRA 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0 년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과 처음 AEO MRA(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터키와의 협정에서는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와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 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 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터키 AEO MRA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터키로의 수출 때 검사비용 절감(49 억원) 및 해외공인 비용(53 억원) 등 연간 약

102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세신문사)

**★ KCC 1 분강의**

지난 3 월 1 일부터 터키 수출 통관이 AEO MRA 로 인해 쾌속모드로 돌입했다.

터키의 수입통관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중국등에서 들어오는 전기전자.기기류는 상당부분 "RED LINE"로 분류가 되어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를 거친 후 수취가 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 이번 AEO MRA 로 인하여 향후 연간 102 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터키와 인접한 그리스의 경우 우리나라 신차 점유율 1 위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불가리아와 시리아등 국가와도 이번 터키의 AEO MRA 를 통해 무역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향후 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AEO MRA 를 추진할 계획이다.



## 中, 해외 직구 세금 낮춰 수입 확대 노린다

중국정부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행우세 세율을 낮춰 수입과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고 KOTRA 광저우무역관이 소개했다.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를 합해 징수하는 수입세로, 입국 시 개인 수하물과 우편물 등이 납세 대상이다.

中 정부는 올 4월 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행우세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은 기존 15%에서 13%로,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25%에서 20%,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에 따라 ‘수입물품 분류표’ 및 ‘수입물품 납세가격표’를 조정했다.

광저우무역관은 中 정부가 행우세를 낮춤에 따라 소비자가 수입 시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 해외 제품의 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전자상거래 직구 방식과 해외 직배송 방식 중 제품 특징과 가격대에 따라 한도, 면세, 세율, 납세가격 등을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방식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행우세 조정 전후 부분 세율 비교】

세번	분류	범위	기존 세율	조정 세율
0100,0000	식품, 음료, 약품	식품 : 유제품, 설탕, 조미료, 인삼, 고려삼, 홍삼, 분유, 보건식품, 보양식 등	15%	13%
		음료 : 생수, 탄산음료, 커피, 차, 기타 무알코올 음료		
		약품 : 한약주 등		
		국가 규정상 수입 증치세 3%를 삭감해주는 항암약품	3%	-
0400,0000	방직품	의류 : 겔옷, 바지, 속옷 바지, 셔츠, 티셔츠, 기타 의류 등	25%	20%
		액세서리 : 모자, 스카프, 두건, 목도리, 넥타이, 벨트, 장갑, 양말, 손수건 등		
		가정용 방직품 : 담요, 이불, 베개, 침대 커버, 침낭, 커튼 등		
		기타 : 수건, 목욕타월, 테이블보, 커튼, 카펫 등		
0500,0000	가죽 의류 및 액세서리	각종 스타일의 가죽 의류 및 가죽 액세서리 등	25%	20%
0600,0000	캐리어 및 부츠	캐리어 : 다양한 재질의 캐리어	25%	20%
		가방 : 각종 소재의 크로스백, 백팩, 핸드백 등		
		지갑 : 각종 소재의 지갑, 열쇠지갑, 카드지갑 등		
		기타 : 화장품 파우치, 포장백 등		
		신발 : 가죽 신발, 가죽 부츠, 운동화 및 기타 신발류		

★ KCC 1 분강의

행우세란 특송 통관 관세율의 특징은 일반무역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다른 행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 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하고 우리나라의 간이세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작년 11월 1일 감세정책에 이어 6개월만의 인하정책으로 이는  
해외직구세를 인하함으로써 소비진작목적으로 하는데 있으나  
중국 내부에서는 2% 감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